

제18장 투명성

제18.1조 공표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의 조치를 신속하게 공표하거나,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
2. 가능한 한도 내에서, 각 당사국은

- 가.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모든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. 그리고
- 나.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.

제18.2조 통보와 정보의 제공

1. 가능한 한도 내에서,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 협정상 다른 쪽 당사국의 정당한 이익에 달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제안된 또는 실제 조치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.

2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한쪽 당사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요청 당사국이 전에 그 조치를 통보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,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,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.

3. 이 조에서 언급된 정보는 그 정보가 세계무역기구로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져 이용 가능하게 되었거나, 해당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개설하고 대중에게 공개되어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, 제공된 것으로 간주한다.

4. 이 조에 따른 모든 통보, 요청 또는 정보는 제19.5조(접촉선)에서 언급된 양 당사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한다.

제18.3조 행정절차

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,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,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제18.1조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.

- 가.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,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,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,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리에 대한 진술 및 모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보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그 당사국의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
- 나. 시간, 절차의 성격,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, 그러한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, 그리고
- 다. 자국의 절차는 자국 법에 따를 것

제18.4조 재심 및 불복청구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최종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,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, 사법,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, 행정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,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.
2.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.
 - 가.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, 그리고
 - 나.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,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
3.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재심을 조건으로,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이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.